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 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육성
- 이에 투자조합 출자금을 2022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1) 대상기관

기관명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김철우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3, 9층 (역산동, 예동빌딩)
설립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2) 출자예정액 : 금1,620,000천원 (3차)

(3) 출자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나. 사업개요

(1) 조 합 명 :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 한국모태펀드 2019년 3차 출자사업(지방기업) 선정('19. 9. 2.)
- 투자조합 결성('19. 12. 30.)
- 결성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 * 한국모태펀드 : '0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으로 한국벤처투자(주)가 운용

(2) 운 용 사 :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3) 출 자 자

- 업무집행조합원 :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 유한책임조합원 : 구미시, 경상북도,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주)대구은행
- 특 별 조 합 원 : 한국모태펀드

(4) 조합결성액 : 161억원

- 연도별출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2년
합계	161	48.3	25.76	86.94
국비(한국모태펀드)	87	26.1	13.92	46.98
구 미 시	30	9	4.8	16.2
경 상 북 도	20	6	3.2	10.8
구미전자정보기술원	10	3	1.6	5.4
대구은행	10	3	1.6	5.4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4	1.2	0.64	2.16

(5) 존속기간 : 8년(투자4년, 회수4년) * 출자금 납부 : 3년

(6) 투자대상 : 구미·경북권 일자리 창출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등

(7)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환경변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전략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목적 달성

다. 출자 필요성

- (1) 구미시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많으나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 (2) 기계, 자동차,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의 기존산업과 최첨단 신기술을 연계한 융합산업 육성
- (3)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 유망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 (5)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 편성(총16.2억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은

-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출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